#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29

발의연월일: 2021. 7. 15.

발 의 자:장제원·박대수·박덕흠

태영호 · 강기윤 · 백종헌

지성호 · 이주환 · 윤한홍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 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 ·생활·교육·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 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퇴소 이후 '돌아갈 가정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 사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는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실제적 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로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 될 필 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4(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 담기관"이라 한다)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
	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
	<u> </u>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제32조의4(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 다)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 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 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